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6233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조세현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김영식

변론 종결 2020. 6. 4

판결선 고 2020. 7. 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521846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를"도로폐쇄일까지"로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가. 8,684,241원 및 그 중 7,602,825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고,나. 2019 . 5. 18.부터 2019 . 10. 17.까지 월 154,488원, 2019. 10. 18.부터 별지 목록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도로폐쇄일까지 월 166,281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10행의 "K공사의"를 "Q공사의"로고치고,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저j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토지는 Q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지목 및 이용상 황이 '도로'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액은 '전'이 아닌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5, 7호증,을가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경기 광주군 G 전 77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도로에인접한 토지였다.

2) 이 사건 1토지는 1955 . 3. 20.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위 분할 당시 지목은 '도로'였다.

3) 이 사건 1토지는 1972년 이전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었고,피고는 이 사건 1토지가 부지로 편입된 기존도로(이하 '기존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를 넓히는 방법으로 Q공사를 시행하였다.

4) 피고는 Q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1토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였는데,당시 이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1토지는 '전'으로 이용되다가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터 분할되면서 피고가 점유·관리하던 기존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가 이 사건 1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Q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한 때라 아니라 기존도로의 부지로 편입한 때이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1토지가 기존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기재를 삭제하여 "도로폐쇄일까지"로 경정한다(대법원 2019. 2.14. 선고 2015다244432판결 참조).

재판장 판사 황정수판사 최호식판사 이종채

별지